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개정규칙안

의 번 호	87
-------------	----

제출년월일 : 2003. 12. 18
제출자 : 최광렬의원 외6인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심사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 기준 개정(안 제10조)

- 지금까지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을 1일 50,000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회의 참석수당이 기본료 7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인상의 원인이 제기 되었으나 규칙에 수당 지급액을 명시함으로써 지침변동에 따른 규칙개정 등 불필요한 후속조치를 개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1일 50,000원으로 한다”를 “구소속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심사위원회의수당)</p> <p><u>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1일 50,000원으로 한다.</u></p>	<p>제10조(심사위원회의수당)</p> <p><u>구소속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